

제422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9일(수)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상정된 안건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3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3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3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3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3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46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46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4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46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46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46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47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50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50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50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1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51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51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51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51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51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51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51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51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51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5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51

(09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쪽입니다.

먼저 제1차 법안소위 논의 결과 중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여성 가족부의 수정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 제6조의2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안소위 당시 위원님들께서 등록된 기관의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채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에 대해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채용 예정인 모든 돌봄인력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여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현재 채용 예정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군·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절차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의 영유아보육법상에도 보육교사의 관련 범죄경력조회 주체가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서 등록권자가 현재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법적·행정적 체계상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록권자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심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6조 및 6조의2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고 여가부에서 참고자료를 따로 하나 준비해 주셨네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신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장관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꾸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등록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등록제 주체가 시·군·구청장이라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야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그렇게 되면 여가부 쪽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을 유지해서 현장에서는 활용하기가 더 편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인력이라든가 투입되는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책임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의 등록권자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로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당·부당 내지는 적합·부적합만 통보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진숙 위원** 지난번 논의할 때 저희들이 이 문제가 쟁점사항이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육아도우미에게도 결격사유……

○**전진숙 위원**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그 지점만 조금 다시 상기를 시켜 주세요.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논쟁했던 것은 등록 서비스기관이 직접 경찰에 요청할 거냐 아니면 정부부처를 통해서 요청할 거냐 이게 쟁점이었고, 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부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부처는

그냥 여가부로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깊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전진숙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지난번에 논의했던 건 시행하는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예요. 시군구가 등록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정보의 내용, 양을 어디까지 공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기는 한데 똑같이 여가부에서 진행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이나 시군구가 왔을 때 갖는 어려움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가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군구에다가 일정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업무 하중은 시군구에서 고스란히 받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후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잠깐 그것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시군구의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시군구의 재량을 발휘해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고 시군구에 그 권한과 업무를 위임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가부가 기준도 통일시키고 지침도 시군구에 내리고 문제가 있으면 개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아예 법에서부터 여가부가 권한이 없고 시군구에 다 넘겨 버리면 나중에 통일성이나 행정적인 지도가 어려워지잖아요.

○서범수 위원 그 기준이야 당연히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시군구에 보내겠지요. 그렇게 해야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법에 명확히 위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한데 법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영으로 정하는 쪽으로 저희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현재 돌보미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를 자자체장이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던 것을 새로 우리가 힘드니까 너네가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는 데 업무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큰 이견은 없으셨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여가부가 책임 단위로 정해지는 거나 그것을 시군구에 한 거나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업무의 하중과 기타 등등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분이 저는 잘 안 돼요.

○김상욱 위원 저는 김남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령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기준 정한 다음에 위임으로 던지지 이걸 처음부터 던져 버리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 최성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논의해 주신 이후로 타 입법례도 봤는데 보육교사나 장애아동복지나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다 자자체로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입법례보다는 자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희도 급히 시도에 의견 수렴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 시도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이걸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아이돌봄사는 국가자격이니까 당연히 여가부가 하지만 기준에도 아이돌보미는 지자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육아도우미는 지자체에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양이 많으니까 시도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지 이 업무 자체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가부가 정책적인 통일성이거나 기준이나 이런 걸 갖고 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은 여가부가 행정 권한을 갖고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시도에 위임하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감독하기도 쉽고 통일성을 기하기가 쉽잖아요. 못 하는 어떤 지자체는 여가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김상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돌봄사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앙에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반 복지처럼 다 알아서 하라고 지방에 던져 버리면 아이돌봄사 도입하는 취지랑 지금 안 맞거든요.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여가부에서 제공한 참고자료 뒷페이지를 보시면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보고 논의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일 왼쪽에 현행을 보면 현재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활동하는 지자체에서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이렇다라는 점은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도 이 검토안 처음 본 겁니다, 사전에 짜고 한 것 아니고.

검토안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세 단계입니다. 하나는 아이돌봄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1항에 여가부장관이 담당해서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2항은 실제로 활동하는, 왜냐하면 처음에 자격증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할 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이돌봄사든 육아도우미든 지자체장이 경찰서에다가 요청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바뀌는 게 그 뒤에 4항을 보면 과거에는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다 그냥 전달받았는데 앞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받는 걸로 지난번에 논의를 해 주셨고요. 5항에 보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여가부가 기준을 정해서 여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하면 1항대로 돌봄사 부분은 여가부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설명이 좀 불분명 했는데 실제로 여가부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2항이 차이가 있는 건데 2항은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 이 부분은 여가부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담당하는 지정기관이나 등록기관에서 그냥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번을 여가부를 꼭 거치느냐가 이슈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여가부를 다 거치자라고 했는데 여가부가 별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견 없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1번 부분도 업무가 지금 추가되는 건데 2번까지 하는 게 과중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행에 이미 지자체장이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다가 새로운 업무를 부과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지아 위원** 저도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현행 아이돌보미 채용을 시·군·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하지만 어떻게 보

면 이것은 원래도 여성가족부장관을 통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채용 단계에서 시·군·구청장이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채용 단계에서 그 업체에 맡기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당초 민간 업체로 했었던 겁니다.

○**한지아 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우리의 의견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직접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이미 아이돌보미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원화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아이돌보미는 시군구 차원에서 제공기관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돌봄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본사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도우미들은 서울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인천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군구가 이 돌보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을 해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아마 대규모의 큰 업체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그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은 제주도에 있는 건데.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그런데 그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그 기관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제주에 사시는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도 서울에서, 서울청 경찰서에서 조회해도 충분히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서울청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돌보미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별로도 그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나 이런 지역만……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규모 플랫폼들은 대부분 전국 단위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전국 단위로 하는데, 범죄경력조회야 그냥 서울경찰청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결국 그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시군구가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플랫폼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돌보미들을 파견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돌보미들이 실제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결격사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서울에 있는 시군구에서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도우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지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저는 그 관리의 범위가 사업의 실질에 대한 그런 세세한 관리가 다 들어간다면 어떻게 1개의 시군구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설계한 것은 범죄경력조회가 어찌 보면

유일한 관리체계인 것이고 그 관리체계는 1개의 시군구가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만 저희가 인증제라든지 좀 더 딥한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관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 달리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돌보미를 인증할 거라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지금 저희는 등록제이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자격증 관리를 하는 것은 지정 아이돌보미고 지금 논의되는 여기 2항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활용하던 아이돌보미들을 등록제로 들여와서 저희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좀 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를 한 겁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 아이돌보미를 등록하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민간 아이돌보미를 등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이 범죄경력조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 부분도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범죄경력조회 말고는 어떤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 보수교육이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거지요.

○**김남희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은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건강검진은 채용하는 그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전국 단위 플랫폼이면 건강검진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대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그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서울에 있는 시군구가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이 법 자체가 사실 민간 등록기관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범죄경력조회를 거쳤다, 건강검진서를 제출했다 그런 정보만 플랫폼에다가 제공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보를 보고 신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업체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외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자료를 내는 거라서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플랫폼이 다 서울에 모여 있으면 업무가 과중할 수 있으니까 그건 등록 서비스기관의 소재지나 아니면 육아도우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가부령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김남희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특정 지역에 가중되거나 이런 건 현황파악을 하시고 여가부령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그다음에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백승아 위원** 이게 범죄경력조회뿐만 아니라 관통하는, 전체적·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지자체에 권한을 준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것 핸들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법안 자체는 사실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주려고,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백승아 위원 취지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돌봄 문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등록도 시키고 관리도 좀 해 보려는 취지였는데 이 내용들을 지난번이랑 면면이 보면 총체적으로 어쨌든 민간 돌봄업체들을 등록시키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최소한의 기준이고 사실상 서류상의 조건만 부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부 인증 등록기관이라는 명칭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 증명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업체들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반대로 민영화시켜 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저는 실제 사용자였고 엄마로서 봤을 때 범죄경력조회뿐만이 아니라 여가부가 딱 틀어 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할 힘이 없으니, 여력이 없으니 지금民間에 난립되어 있는 업체들을 등록시켜 주고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엄마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겠다. 너무 최소한의 기준이고 이 이름을 달면 엄마들은 여가부 인증기관이네라는 것만 보고도 이건 나라에서 관리하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그렇게 관리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과 등록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고요 수요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정책들을 홍보하고 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기관까지…… 현재 완전히 사각지대인 거지요, 등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등록에 대한 것들을 등록했으면 여가부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 부분에서.

○백승아 위원 그러면 등록시켜 주면 안 돼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사각지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등록 제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든가 지도·명령……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것들을 들어오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하늘이법이 요새 하도 이슈여 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교원단체들을 다 만났거든요. 오늘 수요일에는 학부모단체를 다 만나요. 제가 교원단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뚜렷해지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오늘 학부모님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이돌보미의 생각이나 서비스제공기관, 민간기업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나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전진숙 위원 지금 백승아 위원님이 그렇게 제기를 해 버리면 앞에서 논의해 왔던 것들이……

○백승아 위원 그냥 순간 든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진숙 위원 전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난처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도 공공기관의 지정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가자, 공공의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에 공적 영역은 굉장히 줄어들고 민간시장에다가 다 맡겨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가부에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더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개발해 낼 것인가, 그걸 공공의 일자리로 어떻게 가져올 건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제고요.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도 국가자격증 인증이라든가 범죄경력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아이들이고 부모인데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재안으로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위임을 받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정도 선에서 서로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답변부터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들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도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초기의 애로사항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서범수 위원** 여가부에서 별문제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여가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결격사유라든지 인·적성 검사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도에다가 보낼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안에 보면 제4항에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금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이 해요?

○**전진숙 위원** 기준을 정해 주지 않을까요?

○**서범수 위원**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경찰이 해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가족문화과장입니다.

범죄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범죄에 걸렸다, 안 걸렸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해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경찰서장이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 기준, 범죄경력 기준, 결격 기준……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기준이요? 지금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아마 업무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것 같아요.

○**서법수 위원** 아니,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 경찰이 로데이터를 시군에 보내서 시군 당사자가 결격사유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아닙니다. 저희가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격사유에……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그걸 경찰에 맡기냐고, 결격사유를.

범죄경력조회를 시·도·군에서 받아서 그 담당자가 아이돌봄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지 왜 경찰에 전적으로 결격사유 판단을 맡기냐고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위원님, 범죄경력조회의 모든 입법례가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결과를 행정관청에 보내 주지 그 범죄경력 정보 자체를 이관하는 경우는……

○**서법수 위원** 왜 없어요. 왜 없는데?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입법례가……

○**서법수 위원** ‘서법수’ 치면 범죄경력조회가 죽 나오잖아요. 나오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할 때도 등록할 때 보면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요. 그걸 받아서……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그런데 본인이 그 정보를 요청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경찰서 가서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기관이 그 정보를 직접 받아 올 수 있는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서법수 위원** 로데이터를 못 받는다고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그 행정관청이 ‘황우정’에 대한 범죄경력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서법수 위원** 로데이터를?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이돌봄 지원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은 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회를 해서……

○**서법수 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거 본인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서법수 위원** 받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서법수 위원** 그런데 받는데 로데이터를 못 받는다고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기관은 못 받는다고 저희는 들었고 또 기준으로 저희가 체크할 것은……

○**소위원장 김한규** 궁금한 게 현행 조항을 보면 현행 조항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결과를 받나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 안에 행정정보공동이 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황우정’에 대한 범죄경력을 검색하면 어떤 범죄든 간에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검색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걸로 다 빨라질 것이고요. 범죄경력이 있다라고 나오는 자에 한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물어보면 그 경찰서에서는 ‘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를 통보해 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검토안의 4항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문구로도 그렇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알려 주는 건데 굳이 그런 표현이 안 들어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그렇습니다만 유사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는데 통째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상세한 걸 주느냐 아니면 ‘오, 엑스’냐 이런 것만 하느냐 그런 의미인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4항을 검토안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6조에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6조의2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청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법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고 판단해 봅시다.

○**김상욱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서법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짜 경찰의 업무가 많아지겠지요.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20개 부서 있으면 20개 부서의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서법수 위원** 예를 들면 가족돌봄사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러이러이러한 조항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죽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위원장 김한규** 이거 황 과장님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설명하신 게 맞는지 경찰이든 어디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한지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한지아 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동의하고 이게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이 많고 조율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그쪽을 신청하거나 그런 데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없는 거잖아요, 건강이 어떤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한에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곳에서는 그래도 건강검진이나 범죄경력조회가 된다면 부모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첫 단추일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민간 등록업체들에게 국가에서 그보다 더 관리를 하면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쪽이 등록을 안 할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위원** 저 의견 잠깐만 짧게만……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마지막으로, 10시까지 도저히 지금……

○김상숙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결국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 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의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당연히 여성가족부의 일이고 그걸 기관 위임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처음부터 지자체로 넘겨 버리면…… 저는 김남근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기준이나 아니면 지자체 간에 이런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근 위원님 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전진숙 위원 아까 여가부도 그 안을 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아까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백승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정법이 아니고 여가위 차원에서는 안 했지만 여야가 개별적으로 이런 청문회를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들 노조하고도 논의를 했었고 여가부도 별도로 기존 장관님부터 계속 단체를 만났던 거를 저희 여가위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공청회 없이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지난번에 판단했던 거라 백 위원님께 양해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김남근 위원님하고 김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자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문구를 정리하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팬찮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참고로 백승아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리감독 부분은 뒤에 조항들이 좀 있어요. 여가부장관이 등록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권한을 줄 건지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쪽입니다.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의 연령 결격사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정부안은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차 법안소위 심사 시 육아도우미도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연령도 동일하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인 가사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는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결격사유 연령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8세도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도록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더라도 아이돌봄사 정규 교육과정 이수 및 실습 등을 통해서 돌봄 업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 취지대로 사회 참여 촉진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18세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1페이지,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맨 위에 가사근로자에 대한 건데 거기서는 지금 아이돌봄 업무하고 비슷한 것들을 미성년자로 정해 놓고 있어서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가부는 그래도 18세 미만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김남희 위원** 큰 의미 없지 않을까요? 1살 차이인데……

○**서범수 위원** 정부 입장.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는 18세로 해 달라는 건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완화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저는 현행대로 그냥 미성년자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1페이지 보면 내용들을 죽 보시면 무슨 돌보미, 도우미 이런 것들은 다 미성년자로 돼 있어요. 밑에 18세 미만은 자격증이거든요. 조종면허, 운전면허 이런 거라 성격이 달라서 이것을 굳이……

18세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취지상 그렇게 저희가 많은 참여를 수적으로 기대해서 한다기보다 아까 취지대로 공급에 대해 확대한다는 의미인데……

○**서범수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따라갑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논의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냥 현행대로 갑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하나 드려야 또……

○**소위원장 김한규**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낸 법안이 아니고 김정재 의원안인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3쪽입니다.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의 종사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아이의 안전보호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정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만 취급하고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관 종사자에는 대표자, 임원 및 서비스연계 등 주요업무 담당자 외에 단순 행정보조 직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닫힌 공간에서 아이와 일대일로 대면하는 아이돌봄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장 따로 주신 것은 어디서 준비하신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주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제가 만약에 이게 반영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중앙·광역지원센터 종사자도 각 신청 가구의 개별 정보와 특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 단순 종사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김정재·김한규 의원님이 주신 안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법안을 내기는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돌봄사가 아닌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범죄경력조회를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철회하더라도 김정재 의원안은 계속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아동보호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실익을 보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근데 그분들은 어린이를 직접 만나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아이돌봄 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일은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요, 저희 아이돌봄 기관들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요. 직접 그 가정으로 그렇게 하자는 않고 정보를 좀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진숙 위원** 저는 김한규 위원님이 한 발 살짝 뒤로 물러나시기는 했는데 원안대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아이돌보미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돌보미 자체에 대한 규정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첫 번째 생각과 실은 아이돌보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도 가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센터가, 파견한 업체가 갖는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조항은 그대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만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결격사유도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거지요? 근데 사무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전진숙 위원** 아니, 저는 범죄에 관한 것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결격사유가 있어서 둘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서범수 위원** 범죄의 결격사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결격사유는 모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범죄하고 관련 사항만 되는 거고요.

○**김남희 위원**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서범수 위원** 결격사유라는 게 범죄와 관련되는 결격사유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6페이지 조문을 보시면요. 제6조제1호부터 7호까지, 7호의2부터 7호의4까지, 할 수 없으므로 전부 결격사유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이게 1호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호가 정신질환자, 3호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호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호부터는 범죄경력과 관련된 결격사유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지요. 전과 아닌 것들까지 다 해당되는 거지요.

○**김남희 위원** 전과 아닌 것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파산선고 복권 이것밖에 없는데요. 나머지는 다……

○**서범수 위원** 파산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소위원장 김한규** 미성년자 이슈도 있고요.

○**한지아 위원** 파산도 들어가야 되나요?

○**전진숙 위원** 보통 파산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 이게 너무 넓게 잡아 놨어.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파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김남희 의원이 발의하신 파산법 개정안이 오늘 같이 올라와 있어서 파산자는 좀 배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거 빠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이 되면 빠지는 걸로 저희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직원들이 의견에 반발하거나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사자 자격 관련 현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논의하시는 그런 취지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불이익보다는 사회복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공익을 더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다른 타 법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그래도 일단은 아이돌봄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당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준 종이가 문구를 조정하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종사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1조의 5제2항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대한 각각의 범죄경력조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종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준용보다는 직접 범죄경력 요청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요청방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만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고 위임 규정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각각의 기관에 따른 조항은 앞에 맞춰서 위임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걸 법에 굳이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여성가족부령에다가 정하면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누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법에 넣어야 되나요, 절차적인 부분인데?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본문에 대한 규정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서, 여가부 의견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화를 한 건데 앞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위임 규정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임 규정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문구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7쪽입니다.

27쪽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 자격증 대여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격증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들 주셔서 그렇게 넘어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9쪽입니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정리 사항으로 보수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김한규 의원안도 보수교육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되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돌봄사도 존재하게 되는바, 자격제도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입법례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문을 수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보수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보수교육을 안 받아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말라, 불이익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보수교육을 하러 가는 날에 그 업무를 약간……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구를 보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신 문구가 보수교육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보수교육을 안 받은 경우는, 뒤에 자격정지 부분에서 몇 회 이상 보수교육을 안 받은 경우는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 규정에 있고요. 이것은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그날 공가나 연가를 내고 보수교육을 받으려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의 조항인데 문구를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근데 밑에 각주 9호에 다른 법의 표현하고 동일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9호, 사회복지사법하고 청소년 기본법, 그런데 제가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줘서는 안 된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이건 다른 법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김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사가 상정하는 게 기존의 시스템 밖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돌봄사를 이렇게 국가자격증으로 하면 보수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 번을 안 받으면 자격도 정지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민간 업체들이 자기 소속 돌봄사들의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국가자격이기 때문에 개인이 유지하려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고요.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고 이런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안 받는지 여부는 자격증 관리기관인 여가부에서 확인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자격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업체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격증 체제 내에 있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의 보수교육이지 말씀드린 아이돌봄사 자격증이 없는 돌봄사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업체를 관리하는 항목에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업체에서 그런 걸 체킹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김남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내용 가져오신 걸 보면 민간 등록업체한테 어떤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민간 등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보수교육도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리고 범죄경력조회 이런 것들도 중앙 본사에 있는 시군구에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들이 정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전혀 머리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김남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플랫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국가에다 등록시켜 가지고 관리감독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쉽게 등록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다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등록하는 아이돌보미들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걸 통해서 부모들한테 안심시켜

드리고 괜찮은 육아도우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사건·사고가 터져 가지고 아이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뭔가 확실한 계획이나 현황에 대한 얘기 없이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이 업체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지 저희는 우선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고 보고 결격사유라든가 건강검진이라도 우선 최소한의 장치로 하는 그런 중간 기관으로 저희는民間 등록제를 사실 가지고 온 거고요.

현재도 법에 육아도우미를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몇 년 동안 한 건도 발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관리하는 그런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록제를 도입한 거고 여기에 바로 저희가 무슨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관리와民間 업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하라는 그 정도의 취지라고, 우선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民间 등록 업체들을 저희가 당연히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냥 추산만 할 뿐인 거고……

○**김남희 위원** 저는 취지는 당연히 알지요. 그 취지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앞으로 그 관련된 업무를 시군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군구가 뭘 할 건지, 그러면 시군구가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지금까지 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해서 시군구 보고 ‘그 등록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라고 해’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최소한의 그것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을 하지만 보통 국민들은 이게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신뢰나 이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최소한 시군구가 어떤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같은 걸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지금 유사한 제도가, 가사관리사도 플랫폼이 있지만 이제 인증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느슨한 단계로 등록으로 먼저 도입을 했는데 지난번民間 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깔아 드려도 될까요?

○**김남희 위원** 저 지금까지 보고받지 못했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죄송합니다. 미리 못 드렸는데 깔아 드려서……

○**김남희 위원** 그리고 제가 10시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서범수 위원** 등록제의 주체가 비록 시군구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획일화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결격사유라든지 인·적성 검사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영등포에 등록을 했다, 영등포에서 일을 한다는 아이돌봄사하고 부산의 어느 지역의 아이돌봄사하고 자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 회사에서 이 사람을 끌고 오더라도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범죄경력조회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가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아마 공문을 받아서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하면 경찰에서는 담당자가 법제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결격사유를 죽 훑어 본대요. 훑어 봄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만 통보를 해 준다고 내가 확인을 했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이 자료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민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은 당연히 저희가 아이돌보미만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게, 통계청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 활동인구가 한 11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사도 하는 사람이 혼재해 있어서 저희가 11만 5000명이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돌봄업체는 가사근로자법에 의해서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하는 기관들이 지금 고용부에서 인증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아이돌봄만 제공하는 기관이 약 57개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아이돌봄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직업소개업이나 직업정보업 그리고 일부는 말씀드린 고용부의 가사서비스기관으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등록제로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했을 때 70% 정도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육아도우미와 가사 업무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수요조사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을 해 달라, 육아도우미 정보 제공을 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이셨습니다.

저희는 일차적으로 등록기관을 등록을 시키고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게 사실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육아도우미 사업체 선정 시 수요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고 봤더니 정부에 등록했는지를 주로 보겠다, 자격증 소지 도우미가 있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평판 등을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김남희 위원** 지금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잖아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공기관의 관리감독하고 육아도우미를 교육 지원하고 정보 제공해라, 그런데 지금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범죄경력과 건강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교육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여가부가 가져오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 저는 내용을 못 찾겠는데 결국은 37.9%와 33.3%가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보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종사자들한테 교육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없더라도 저희가……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돌봄사만 보수교육 대상이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의무 대상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의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사가 아닌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하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플랫폼업체에서 그런 보수교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이돌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민간은 결국 대부분은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들일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법안이 김한규 법안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정부 법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남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뒤에도 관리·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요. 13조의2, 18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더 할 견지를 논의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백승아 위원**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향은 여기지만 지금 당장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라서 이 법안이 나온 거고 여기까지는 당장 못 하니까, 이상적인 건 나라가 아예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관리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등록시켜서 조금이라도 관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소위원장 김한규**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백승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 놓고 정부는 책임지지 말자, 여기까지 관여해야 되냐라는 게 기준이었고, 그래도 전과는 확인해야지라는 게 법안의 취지였는데 제가 21대 국회 때 여러 번 여쭤보고 부탁을 드려도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렇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을 두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공공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공공은 정부에서 금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과 민간은 큰 차이가 있다, 민간은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공공은 물론 가·다·라·마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에서 100% 하고 민간은 금지시키겠다 그것은 입법적으로 노력해도 되는데 이미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 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전과하고 건강, 최소한도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쟁기자,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수교육도 받고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는 아이돌봄사와 그렇지 않은 육아도우미 이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거고 갈수록 육아도우미를 줄여서 다 아 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계속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게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해야 될 건지는 사실 김정재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민간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이고 김정재 의원님은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건 뒤 조항이 있으니까……

의원입법인데 정부가 저 대신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 취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뒷부분까지 죽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할 조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체계로 가자면 등록되지 않은 육아도우미, 등록된 육아도우미, 그다음에 아이돌봄사,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점점 한 단계씩 올려서 마지막에는 아이돌봄사 형식으로 갖추는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차근차근 같이 단계별로 상승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나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면 상향 평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혹시 민간기관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까 120시간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걸 기반으로 그냥 활동을 하게 되고 공공이야 보수교육을 받게끔 의무화시킬 건데 그건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그리고 재상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이랬을 때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요.

○전진숙 위원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마 교육비용 같은 것들이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의무화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3쪽입니다.

아이돌봄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의 의무로 현행과 같이 건강진단 수검을 규정하고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민간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는 특정 질병이 있어도 활동제한 규정이 없는바 선언적 규정이라도 아이돌봄사의 의무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정재 의원안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포함하여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법안소위 시 지정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아이돌봄사 채용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현행과 같이 광역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10조의2제2항의 수행주체를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이돌봄사 활동 정지 조항과 서비스제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모두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하고 싶은데요. 정부에다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건강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아이돌봄사는 자격증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아니고 정지된가요? 취소인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소까지도 가능한데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를 거쳐서 취소를 하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만 해당되고 다른 질병에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결격사유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정신질환자만 해당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지금도 정신질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기타 여가부령인가 이런 데서 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것은 그 질병이 있는 동안만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그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현행 규정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제공기관에 의무 부과하는 김한규 의원님 안 수정 수용하는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다만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아이돌보미로 건강진단이 돼 있는데 아이돌봄사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도 포함되도록 조문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에 보시면 35쪽, 10조의2제2항입니다. 육아도우미를 조문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지금 육아도우미는 활동하는 데 그런 자격 조건이 현재는 없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육아도우미까지 자격 조건을 넣는 거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은 등록된 육아도우미를 말하는 거지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질병은 결핵, B형간염 등 전염성 질병과 중증우울증 등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정신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고 건강진단과 관련한 활동금지 조항은 그 질병이 있는 동안에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중증우울증도 마찬가지인가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 있는 동안에 활동을 못 하는……

○한지아 위원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셨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한지아 위원 그 결격사유를 어떻게, 수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 시행규칙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고시한 질병……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질병의 종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알콜중독, 약물 의존, 조현병……

○서범수 위원 정신질환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한지아 위원 정신질환도 너무나도 넓은데 판단 기준은……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지금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에 매년 정신질환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산후도우미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질병 진단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어디서……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법령 규정은 딱 없다고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신질환의 종류로 복지부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알콜, 약물 의존,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 다섯 가지만요?

○소위원장 김한규 건강검진을 받아서 정신질환이라고 결과가 나온 사람들을 활동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의료법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질병코드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냥 건강검진 결과에 정신질환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에서 나온 것은 우울증 항목이고요. 그게 10년 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지아 위원 그게 이제 2년으로 바뀌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유사 입법례를 보다 보니까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도우미는 매년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 대한……

ICD 코드 중에서 정신질환자는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5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규칙에 현재는……

○소위원장 김한규 규칙은 정신질환 외에 추가적인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정할 예정입니다.

○한지아 위원 만일 정신질환으로 한정을 할 거면, 아무튼 모든 ICD 코드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걸 정하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증우울증이 있으면 치료받고 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인 스티그마(stigma) 때문에 치료 안 받습니다.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안에는 저는 찬성해요. 이 구문에는 찬성하는데 33쪽 검토의견에 보면 ‘결핵, B형간염 등 전염성 질병과 중증우울증’ 그런데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교육위에서 막 그랬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떤 편견을 심어 줄 수가 있어서 숨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사례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치료를 안 받고 약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러면 다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교사들 4명 중의 1명은 우울증이에요. 일상생활 가능한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할 때 조금 세심하게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B형간염은 보통 한 번 감염되면 계속 가거든요. 이게 조금 아직은 불분명…… 이 취지는 꼭 해야 되고 이 법은 가야 되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때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티그마타이즈(stigmatize)가 되지 않게끔 정책을 정교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법 제6조(결격사유) 2호에 정신질환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 없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세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는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내도록 하고요. 매년 인·적성 검사를 앞으로……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건 좋은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된다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황우정입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의 항목만 되어 있지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채용신체검사서나 아니면 일반건강검진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의사가 면접으로 해서 아니면 병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경증 우울증 환자가 저 우울증이 있어요라고 의사한테 면담을 했다, 그러면 현재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합니까?

○여성가족부기족문화과장 황우정 사실 그것은 의사의 판단인데 아마 현실로는 그렇게는, 정신질환까지로 체크해 주시지는……

○한지아 위원 10년마다 하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울감부터 시작해서 심한 우울 이렇게 몇 가지 항목, 퀘스천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울감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민감도가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은 굉장히 큰 개인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를 수 있는 건 아마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은 크게는 없지 않을까……

○서범수 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한지아 위원 예, 형식적이기는 합니다.

○서범수 위원 10년에 한 번씩 우울증 검사한다고…… 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한지아 위원 이제는 2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검사 자체는 제가 알기로 우울감이 있고 그런 걸 결요.

○여성가족부기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맞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PHQ-9……

○한지아 위원 우울증 선별검사 제가 알기로는 벡(Beck) 선별검사인데 그게 결국에는 진단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기족문화과장 황우정 다만 저희가 매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니까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우울감이 높게 나오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센터 차원의 관리체계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런 걸 겁니다, 조절이 안 되는 조현병, 중증 우울증. 우울감이랑 우울증이랑도 다르고 거기서 중증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건강진단을 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합니까?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전진숙 위원 그냥 형식적인……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체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는 그것도 보지만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면접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시거나 인·적성 검사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서범수 위원 제가 알코올성 우울증인데 제가 그래 보여요?

○한지아 위원 좀 우울해 보이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국회의원성 우울증인데.

(웃음소리)

○서범수 위원 그게 참 어렵다……

○한지아 위원 두 분 다 안 그래 보이십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것을 다 넣으면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법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한지아 위원 이것은 낙인의 우려랑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 정신질환자들이 치료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갈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우려하시는 취지는 알겠고 말씀하신 어느 정도까지 판단의 기준은 저희가 타 법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채용 시에 어떻게 하는 부분 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전문가 자문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적 성 검사는 진짜 중요한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돌봄사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그게 인증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거나 정교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이면 고도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나간 아이돌봄사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에 새로운 걸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 사항들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결격사유 측면으로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게 마약중독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그거 외에 건강진단 사항으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질환들 이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결격사유는 아닌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이번에 명확하게 넣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서 결핵 감염으로만 돼 있는 상황인데 아까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핵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도 나중에 여가부에서 시행규칙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격사유에 대한 게 아니라서……

결격사유는 문제는 지금 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든지 마약중독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저희 개정안은 상관없는데 지금 교육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랑 검토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자 이런 게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또 있으니까, 물론 반대의 부모들의 우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정신질환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인·적성 검사 부분 하나하고 건강검진 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전체회의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은 동의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제10조의2제1항은 아이돌봄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 2항은 기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1항은 현재 아이돌봄사 그대로 두는 거고 여가부의 의견은 2항에 기관들이 육아 돌보미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만 육아도우미를 포함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수용하시는 건지 확인……

○소위원장 김한규 그 차이가 있구나.

죄송한데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자체는 전혀 없는데 그 규정 없이 그냥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만 집어넣자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선언적 규정이긴 하지만 제공기관에 그만큼 관리에 신중해질 수 있는 당부를 했다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계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서범수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한 단계씩 올라갑시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한규 육아도우미까지도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요?

○서범수 위원 예, 이건 선언적 규정이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기관에서는 그런 책임감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등록기관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법상 처벌규정은 없는데 그런 선언적 의무를 부과하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한지아 위원 죄송한데 결격사유가 여기 어디에 써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6조……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앞쪽에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4페이지 보시면……

○백승아 위원 죄송한데 제가 가야 돼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저는 남은 조항들 다 살펴봤는데 김한규 의원님 안에 다 찬성하고, 다만 전에도 말씀했었던 채용업무주체 광역센터로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대로 돌리는. 저는 그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취지는 공공성 강화니까 최대한 광역지원센터들이 차차 하도록 도와줘야지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보류하면 좋겠고 나머지는……

○소위원장 김한규 그 규정은 이미 지난번에 먼저 논의를 했거든요.

○백승아 위원 예, 맞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통일했고 그 조항은 폐기하지 않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놔둘 테니까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법안 자체는 남겨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승아 위원 나머지는 김한규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육아도우미까지 포함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2항에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업무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중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의 대상을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시는 거지요? 기존에는 절차 이런 것들은 여가부령으로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서 대통령령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정재 의원안이긴 한데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보통 지정기준 부분은 대령으로 많이 하고, 여가부령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정기준이 좀 중요한 사항이라 일반적으로 대령으로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거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요, 지난번에 전담기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자격관리 전담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자격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법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다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1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 중이고 지역 사정상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인근 서비스제공기관과 통합운영도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한규 의원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것보다는 표현은 김정재 의원님 안처럼 ‘지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맞겠네요.

○서법수 위원 미지정 지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다 지정돼 있는데 지정이 안 돼 있는 시도 광역 단위가 부산…… 두 군데만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이게 기초인데.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군구 단위에서 미지정된 데가 부산 중구하고 인천 옹진군입니다. 두 군데만 빼고 다 지정돼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다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서법수 위원 여기는 왜 안 하는데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아이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법수 위원 그 동네는 아이가 없긴 없겠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여기는 인근 서비스제공기관과 통합운영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인근에서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 주변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보내……

○소위원장 김한규 중구 말고 옆의 구?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서법수 위원 다른 데 가도 됩니까? 옆에 서구나 동구 쪽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서법수 위원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건데……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애가 없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5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휴·폐업 신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칭금지 및 별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폐업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폐업 시 신고의무 기관을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김한규 의원안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기관도 휴·폐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신고 대상에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모두를 포함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두 번째 휴·폐업 신고의무 모두 김정재 의원안을 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수석전문위원님처럼 김정재 의원안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 왜 자꾸 김정재 의원안을 고수해요? 위원장님 안을 고수해야지.

○소위원장 김한규 지정하고 등록이 앞부분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전제를 달리 한 조항들이 다 무의미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9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리·평가 대상에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만을 포함하고 김한규 의원안은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관리·평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 도입 초기와 운영비 보조,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등록제 도입 초기라는 점과 등록 부담을 경감시켜서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견부터 말씀하시면 우리가……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저는 김남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록한 서비스제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무런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려면 관리·평가를 해야 시정을 할 수 있지 자료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데 시정명령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봄야겠지만 이취지를 고려하면 저는 등록기관까지도 관리·평가의 대상으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범수 위원 관리·평가를 함께 있어서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재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없고……

○서범수 위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방향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보면 현재는 저희 의견은 이것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

으로 일단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 정도로 해 주시면 도입 초기에 그러한 의무에 대한 것들은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추후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정책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면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원화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예를 들면 지정기관을 관리·평가하는 방법하고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관리·평가 방법을 조금 이원화시키면 어떨까요? 조금 완화시키고 한쪽은 좀 엄격하게 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취지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부령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원화시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평가는 해 줘야 그리고 관리를 해 줘야 수요자 입장에서 좀 안심하고 어디가 좋을까에 대한 기준도 세워질 것 같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런 검토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현재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정기관에 대해서 저희 법안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의무로 하자라기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것은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는 어떻게 지정 서비스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도 아직은 안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 지금도 3단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행법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치인데 ‘공개’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들려서 평가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톤 다운하는 대안으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지정기관을 평가한 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미지정 기관은 평가할 수 있다 정도로 2단계로 하는 것도……

○소위원장 김한규 제 생각에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를 넣어 가지고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지금 일단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지요? 등록을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민간 업체들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요. 저희가 등록을 유인하는, 지금은 등록만으로 유인이 돼서 신뢰도를 높였는데……

○한지아 위원 그렇지요. 일단 등록만으로 유인을 하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부담 없이 아마 등록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도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따른 평가를 매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추가적인 평가나 이런 것을 2단계 평가를 했을 때 혹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할까, 조금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공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워딩을 한번 다듬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현행 4항에서 평가 결과, 공개 방법 이런 걸 다 여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령에서 지정기관에 대한 부분, 등록기관에 대한 부분을 차별화해서 충분히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그 문구를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현행 4항이 이미 위임을 하고 있어서요.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 4항이요? 생략이 돼서 그렇구나.

13조의2가 그렇게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8조 4항이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관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취지대로 저희가 그 영에 구체화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요. 지금은 여성가족부령 시행규칙을 봤더니, 시행규칙 제13조인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냥 여기 보면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되게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서 하여튼 나중에 시행규칙은 좀 디테일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1쪽입니다.

51쪽,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시정명령권 신설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전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여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전에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7조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목을 내용에 맞추어 ‘시정명령의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만 다만 등록기관은 소속 육아도우미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17조 2항 6호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변경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만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수정하는 부분만……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17조 2항 6호에 보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만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육아도우미나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하겠다라는 결로 바꾸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님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법수 위원** 이걸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알선한 사람……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등록된 기관이 본인들이 육아도우미가 아동학대를 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거나 적절한 피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기관 관리 소홀로……

○**서법수 위원** 예를 들면 아이돌봄사가 내가 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이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 다른 사람이 알선하는 플랫폼 업체가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봄사가 이 사람의 알선에 의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나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기관 하나가 더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체라면 제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도 회원 가입을 받고 이용 고객도 회원 가입을 받아서 두 분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아이돌봄사가 이용자의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라고 하는 경우……

○**서법수 위원** 지금 플랫폼 형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이 형식이 플랫폼 형식입니다.

○**서법수 위원** 근데 만약에 한 업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알선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못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그런 경우는……

○**서법수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예, 재파견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현재로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하여튼 현행 17조 2항 6호의 표현을 육아도우미에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만 돼 있는 건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럼시다, 어차피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5쪽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보호자 만족도 조사 대상을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에 소속되거나 기관을 통해 연계되지 않은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함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김한규 의원님 안 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그런데 꼭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관리·평가에 다 포함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이건 평가랑 다르게 개별 가정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라서 저희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한다면 기관의 매칭이나 돌보미에 대한 것도……

○**서법수 위원** 저는 두 번 일이 안 되나 싶어서…… 예를 들면 관리·평가 대상에 만족도 조사를 포함시켜 버리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평가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시설의 운영이나 그런 것들 전반적인 걸 보는 거라서……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참고로 현행법에는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여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유선전화, 휴대전화로 면접도 해야 되고 방문조사, 설문조사도 하게 돼 있고 그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법수 위원** 실제로 만족도 조사 합니까?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지금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현행법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러니까 조금 항목이 달라서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서 저희가 앞으로 기관을 조사할 때 거기마다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할 수 있을지……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지금 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을 하여튼 표현을 돌보미가 아니라 아이돌봄기관으로 제가 바꾸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돌봄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다만 돌봄사들이 막 자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공개되고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어서 돌봄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난 돌보미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돌봄사 누구가 몇 점, 뭐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돌보미들도 크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법수 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느 걸 많이 볼까요? 돌봄서비스 기관의 관리·평가 항목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어느 걸 많이 볼까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만족도 조사 쪽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할 때는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나 양육 부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경력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항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서법수 위원 다른 법에도 만족도 조사 해야 된다는 게 법률에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타 입법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법에 넣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현행법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서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관리·평가 항목에 만족도 조사를 넣으면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운영상 가능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관리·평가의 주기하고 만족도 조사의 주기가……

○서법수 위원 그거야 맞추면 되지요. 그게 어렵나?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래도 만족도 조사는 좀 더 상시적으로……

○서법수 위원 이거 주기는 언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관리·평가는 약간……

○서법수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언제 하는데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둘 다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미는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조항을 구태여 없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고 평가도 매년 합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통합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개별 돌보미에 대해서 나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통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 개별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현행에서는 아이돌봄사들이 그런 걸 좀 표현을 합니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정교한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한규 역시 김정재 의원안이 훌륭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중간 의미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팔호하고 ‘아이돌봄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정이나 등록한 기관 안에 있는 아이돌봄사랑 육아도우미를…… 지금은 그 기관이 아닌 아이돌봄사를 만족도 조사 하기가 힘드니까……

○**한지아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돌봄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총괄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서 가야 된다 이것만 구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근데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것은 아이돌보미의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배제된다면 서비스기관 만족도 가…… 사실은 그게 액기스거든요.

○**한지아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관에 대한 만족도면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의 활용이 좀 편했느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아이돌봄사에 대한 것이 그 안에 꼭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뜻이지요.

왜냐하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사용자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결국에는 아이돌봄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니까 저는 김정재 의원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할까요? 서범수 위원님 어떠신가요?

○**서범수 위원**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까 수석님이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사 조사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시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7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한규 원안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고 운영비 지원 규정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기관의 등록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비용 지원과 관련한 입법례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을 다양하게 정하여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돌봄서비스 연계 수수료율 제한 규정은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가격에 이미 운영비·영업이익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비

용 지원 및 비용의 보조 의무규정은 지자체 재정부담 수반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신중 검토하자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있고 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정부가 서비스 비용 자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을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가·나·다·라·마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된다’ 어떻게 정하든 여가부령으로 정부가 되게 범위를 줄여 버리면 무의미하게 되는 거라서 저는 1항은 지금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서 제 의견대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6조에 비용 보조는 결국 그것도 세부적으로 두 가지인데 등록이든 지정이든 정부가 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규정할 건지가 하나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민간 등록기관 여기에도 지원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이슈가 돼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 의견들은 당연히 보조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인 것 같고 그래서 시간상도 그 부분은 현재대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정하고 등록 전부 다 해서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지금은 당장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재정 상황이나 여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등록의 유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현행법에 26조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기관이라 하면……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지금 현재요?

○**서법수 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현재는 지정기관만……

○**서법수 위원** 왜 그러지요?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소위원장 김한규** 현재는 지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김정재 의원안이……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밖에 없지만 앞으로 등록 서비스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그대로 놓으면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보면 김정재 의원님이 지정으로 한정을 했는데 정부는 김정재 의원안처럼 지정으로 좁히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범수 위원** 정부는 위원장님 말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등록제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운영 추이를 보아 가며 지원 여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서범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놔 놓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변경해도 될 것 같고요. 현행은 ‘서비스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확하게 자구를 변경하면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정도는 안 가능한가요?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해 버리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표현을 제 법안처럼 복잡하게 안 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행 법안의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꾸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여가부령으로 안 해도 사실은 ‘할 수 있다’니까 행정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나중에 정하시면 되는 이슈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1쪽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아이돌봄사 등에 대한 지도·명령 및 질문·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지도·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에 현행과 같이 아이돌봄사를 포함하고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보미는 제외하고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이돌봄인력의 아동학대 등의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아이돌봄사에게 지도 또는 질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지도·명령 및 질문·검사의 대상에 아이돌봄사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김한규 위원님 의견 부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결국은 돌봄사를 개별적으로 집어넣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것 빼고는 동일한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취지는 돌봄사에 대해 굳이 부담스럽게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서비스기관에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냥 제 의견을 포기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행도 있기 때문에 돌봄사들이 불만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정재 의원안대로 가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통과.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3쪽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법문의 표현이 불명확하므로 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대상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과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사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도 비밀누설금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첫 번째 실태조사결과 공표와 두 번째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 모두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실태조사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3년마다 저희가 아이돌봄 수요나 국민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서법수 위원 이렇게 뭐가 뭐가 많아요. 평가도 해야 되고 만족도도 조사해야 되고 실태도 조사해야 되고.

○소위원장 김한규 사실 김정재 의원안하고 제 안도 현행하시는 것을 염격하게 봤을 때 부담을 더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꼭 안 해도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냥 표현을 좀 바꾼 거라 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비밀누설금지는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전문위원님 얘기처럼 육아도우미도 비밀누설금지 조항, 대상으로 넣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법수 위원 저도 이게 생소한데, 현행 비밀누설금지 의무 대상 있지요? 처음 법을 만들 때 이것은 왜 조항을 넣었나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게 가정 돌보미다 보니까 가정에 파견돼서 이런 돌봄을 공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또 개별적인 신상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이돌보미들이 집안에 가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혹시 질병이라든지 기타 대외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사항들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용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기네들이, 부모들이 그냥 힘들게 키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두자 이런 취지에서.....

○서범수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그 대상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 이것만 포함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기존에 기관의 종사자는 다 들어 있고요. 새로 등록기관을.....

○서범수 위원 아이돌봄사는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현재 행정 규정에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서범수 위원 난 그게 없어서 왜 이러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는 아이돌봄사는 당연히.....

○소위원장 김한규 행정 규정입니다. 육아도우미까지 넣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서범수 위원 넣어야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육아도우미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5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국회 심사기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바 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례입니다.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강화 측면에서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제9조는 자구 수정 외에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어 경과조치는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은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아이돌보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첫 번째 시행일,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례, 세 번째 경과조치, 네 번째 다른 법률의 개정, 모두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결국 제가 추가했던 부분인데 부칙 3조에 보면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아이돌보미로 교육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돌봄사 자격은 당연히 갖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요건이 더 엄격해져 가지고 그걸 충족 못 한 건 1년 내에 취득해야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지요? 제가 만들기는 했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처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부분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의무조항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법수 위원** 그 교육이 몇 시간이라 그러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6시간.

○**서법수 위원** 새로 하려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20시간이고 매년 보수교육 시간은 1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지금 보수교육이 자격요건은 아니잖아요. 그걸 안 갖추더라도……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3년이 지나면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서법수 위원**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다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하셨고 인·적성 검사도 통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자격증을 도입할 때 안전장치로 혹시나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을까 봐 1년 이내에 갖추도록 이런 조항을 많이 둔다고 들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나 없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양성교육 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시고 인·적성 검사 받은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공적으로 받으셨다는 확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걸로 인정하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른 법 참고해서 이렇게 혹시 모를 조항을 넣었는데 막상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현재는 다섯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법을 바꾸면서 여섯 가지 자격을 만들어서 기존 사람들한테 약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그냥 자격증 줄게. 하지만 이건 1년 이내에 취득해’ 이렇게 하나를 더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강검진 계속 받아야 되고 이것은 자격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히 명확하게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 단서조항, ‘다만’ 이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내가 뭐를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하고 동일하게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 단서규정이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요건보다 좀 더 강화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 단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자격요건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를 확인하셔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단서규정이 필요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초안을 만들 때는 혹시라도 자격요건 같은 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서 넣었는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단서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뭘 더 따야 되나 막 그럴까 봐……

지금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서법수 위원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격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서법수 위원 위원장님의 압력하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7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 부적응,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연계 확률을 높이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송옥주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간 지원대상의 통일성 측면에서 박충권 의원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체토론과 관련해 김선민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모두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우선대상자를 법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필요시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으나 꼭 집어 가지고 이분들만 보호를 해야 되느냐, 다른 국민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는가, 법으로 딱 이걸 집어넣어서 북한이탈주민만 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지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병력 조회 요청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명구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항에 병력을 추가하고 요청 대상기관을 병력 확인이 가능한 관계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 정신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병력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보면 과거의 질환, 손상력, 치료 이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력, 흡연, 음주 등의 의학적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하자는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의사선생님 말씀하세요.

○한지아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과도한 병력까지 조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보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사업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률안 일괄 정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시도에서 지정하는 기관인데 주로 직업훈련기관들입니다. 인력개발센터도 들어가고 평생학습교육기관도 들어가고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신규 자격증을 따려면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양성교육은 고용부의 내일배움카드가 그런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곳으로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만드신 건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라는 정부 내 기조에 따른 법 일괄 정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기조가 그런 건가요? 정부 기조니까 여당은 반대 안 하실 거고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의결할 순서인데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다음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아이돌봄 지원법을 의결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법안들이 되게 간단한 건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해 볼까요? 법안을 하나만 통과시키기가 좀 민망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낸 법안이라 그랬다라고 그러실까 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1시20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권 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행위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알면서’란 문구가 들어가서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도 ‘알면서’란 문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크게 이슈가 돼서 본회의에서 갑자기 바꿨던 건데요. 법사위에서 ‘알면서’를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뺐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인선 위원장님하고 제가 법안을 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예,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알면서’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장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여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들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5항과 동일하게 고의를 명시한 표현으로 보아 삭제하더라도 내용상 변동이 없다는 입장과 예외적 처벌 또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요건으로 보아 삭제 시 규정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현행법은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알면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 수준에 의한 부분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관련해서 입법정책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정확하게……

○서범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조 제4항, 12조 제1항, 15조 제1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알면서’를 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김한규 위원님 의견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법조인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기존 다른 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 태양은 좀 다른데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물 제공하는 경우, 주로 소유자가 임차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을 때 이때는 ‘알면서’를 집어넣은 건데 지금 제가 ‘알면서’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행위인데요.

그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한테 알선한 이런 경우 만약에 아동·청소년을 다른 목적으로 알선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이동을 위해서나 아니면 학교·학원 선생님한테 인계하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알면서’라는 문구를 뺏다고 해서 제3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이 문구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알면서’라는 게 없더라도 고의라는 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지를 알아야지만 처벌하는 거라서 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어도 처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1조 4항이 그런 거고.

12조도 마찬가지로 국외 이송하거나 국내 이송하거나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15조는 다른 법률하고 약간 다른데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새롭게 논의하는 법에서 기존 법에 있으니까 여전히 ‘알면서’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고 임차인의 그런 범죄에 제공했다라는 부분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라서 여전히 역울한 형사처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법조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법조인은 여기서 서범수 위원님

도 포함입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법조인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김한규 실무를 더 많이 하셨나요?

○김상욱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과시킨 11조 5항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알면서’ 문구를 빼 버리면 결과론적인 책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서,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임대를 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범죄에 관련되는 제작자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인식도 못하면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위원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입니다.

11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조문이 들어갈 때 위원장님 안처럼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좀 명확하고 예외적 처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면서’라는 부분이 포함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면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2조 1항과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가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인데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한다 이렇게 ‘알면서’가 들어간 것은 약간 가중처벌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면서’라는 표현은 무의적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니까, 미수범 처벌규정, 과실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문구에서만 봤을 때는 고의범 처벌규정이니까 무의적 표현으로 보여지고 도리어 제작의 공범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2조 부분은 11조랑 마찬가지로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니까 이 역시 무의적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5조 부분은 알선영업행위라는 것…… 그때 왜 이렇게 ‘알면서’ ‘알면서’를 다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할 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일단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정 할 때.

○**한지아 위원** 저는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알면서’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없으나 있으나……

○**김상욱 위원** 무의적 표현이고……

○**소위원장 김한규** ‘알면서’라고 문구가 있으면 그걸로 무죄받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범들이 도망가는 구멍이 돼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면서’라는 용어를 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현행에서 이걸 빼 버리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조항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건데 현행 법률에 ‘알면서’가 있다가 이걸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없애 버리면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한지아 위원** 몰라도 처벌이 되는 건 아닌가 보지요?

○**서범수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고의범이니까.

○**김상욱 위원** 모르면 어차피 처벌을 못 해요.

○**서범수 위원** ‘알면서’라는 용어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고의범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현행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걸 개정을 했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물론 서범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알면서’를 넣었다 뺐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건물 제공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다른 법들, 15조 같은 경우에 임대인의 경우는 정말 임차인이 뭘 할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11조하고 12조는 표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그러니까 그 것은 그 자체에서 고의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는 ‘알면서’를 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조 부분은 이것도 뺄 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지금 처벌규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기본적으로 인신매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돼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가중처벌한다는 의미니까 살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위원장 김한규** 그 정도라면 그건 좀 다른 행위 태양인 것 같아서…… 12조도 역시 사실 최근에 문제됐던 ‘알면서’ 문구가 꼭 필요하냐 이슈랑 동일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류를 할까요?

○**서범수 위원** 보류를 좀 하시고, 일단 오셨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11시33분)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바쁘셔서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부터 의결을 하고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항, 3항, 4항, 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1시34분)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1조, 12조, 15조는 보류하고 뒤의 조항부터 죽 논의하고 가능하면 나머지 조항이라도 오늘 함께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서……

○서범수 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한번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와 관련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있는바 찬성하는 측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범죄를 규명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범죄조직 내부 불신을 조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 미국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유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상거래와 비슷한 양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형량 협상은 법치주의 원칙이나 책임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사법협조자가 허위 제보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를 2023년 7월 18일 도입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특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수사의 효율성, 법치주의 및 책임 원칙 위반이나 제도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므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별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요? 의견 없으세요?

○서범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자본시장법 말고 이런 조항이 있는 법안이 없는 거지요, 형사처벌 규정들이?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이거 하나가 되면 또 선례가 돼서 다른 법률에 죽 도입이 될 텐데 형법상 표현이 자수는 아닌 거고요. 그렇지요? 자수는 아닌데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법원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법사위에 가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여기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반드시는 없지요.

○전진숙 위원 저는 굳이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논란의 소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거든요. 법이 무조건 감경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감경을 못 하기 때문에 작량감경 해 가지고 2분의 1 감경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혹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감경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사위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여가위 입장에서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진숙 위원 그 의지가 저하고 위원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제가 선회하자면 나쁜 놈들을 좀 봐주자가 아니라 수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범들한테 자백을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 같은 것을 얻어 내려는 이런 목적으로 법안을 만드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진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다른 법도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를 마치 특별히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진숙 위원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를테면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 약간 회유의 목적을 일정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다가 그렇게 담는 것은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대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법에까지 이렇게 넣고 한다면, 나중에 ‘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했는데 왜 형을 감경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근거를 이 법을 통해서 제시를 한다면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지아 위원 보류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보류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보류하시지요. 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들을 좀 더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쪽입니다.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범수 의원안은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치료감호 기간에도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조기에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후 이수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상 안 제65조제3항의 내용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7쪽입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성폭력처벌법 제29조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 고려 원칙을 선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배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 표현을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아동·청소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위원님도 자구 수정 팬찮으신 건가요?

○한지아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1쪽입니다.

영상물 녹화절차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2항 및 제9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및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 및 배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촬영된 영상물’을 ‘영상녹화물’로 변경하고 설명 시 고려 내용에 ‘장애 정도’를 추가하며 용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된 규정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동일하게 자구 수정하자라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 위원님은 표현 바꾼 것 팬찮으신가요?

○한지아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 위원님도 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7쪽입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 등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물리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28쪽입니다.

다만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영상물’을 ‘영상녹화물’로 변경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에 동의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지니까……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3쪽입니다.

준용규정 정비 등 그 밖의 개정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관련 규정의 준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준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한지아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지아 의원안은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요건을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의 특례를 성폭력처벌법 41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된 의견에 동의하며 수석전문위원의 자구 수정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6쪽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 중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9쪽입니다.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등과 관련한 교육 내용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자격 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과정이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어 보수교육 시 신고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1쪽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하고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실정에 맞추어 정비하며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변 외국교육기관 추가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 과정으로 설립되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와 아동 및 청소년의 대면·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2쪽, 나번 청소년단체 추가 부분입니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번, 대안교육기관 추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각급 학교와 유사하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라번, 기준의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이나 노래연습장업을 법률로 상향한 내용,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던 시설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변경한 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제공·알선하는 사업장과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사업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문을 정비한 내용,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현재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은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쉽게 취업제한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한편 정부안과 한지아 의원안은 취업제한기관이 변동됨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조항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체계의 정합성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모두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업제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단체가 거의 한 1300개 정도까지가 확 늘어나는 건데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은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취지는 당연히 성범죄자가 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벅든(burden)에 대해서 혹시 의견 수렴 같은 걸 해 보셨나 해서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입니다.

입법예고랑 이런 걸 통해서 의견 받았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더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다음 55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성범죄자 채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는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확보 수단의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9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정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위현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고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이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별적 적용례 부분입니다.

영상녹화와 관련한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이미 영상녹화한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영상녹화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설명 의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므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명령 확정 후 형 또는 치료감호 중인 사람, 개정규정 시행 후에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이 있는바 이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의 공포 시 시행, 두 번째 영상녹화 설명의무 적용 시점, 세 번째 취업제한 개정규정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수정의견 모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동의하는데 취업제한기간은 조금 복잡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데요. 정부하고 한지아 의원님 안이 다르잖아요. 한지아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한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부터 하는 거니까 아주 대상이 적은데 수석전문위원님은 이것보다는 훨씬 범위를 넓게 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자는 건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현재 다른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할 수 있는 현행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추가로 제한 기간에 들어가는 사람을 어떤 기간은 취업제한이 되고 어떤 기간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추가되는 기간도 동일하게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법안 먼저 논의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에 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법수 위원님하고 잠깐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만큼이 하나 남았습니다. 법안이 4개인데 오늘 꼭 다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괜찮으시면 김상욱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3권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서법수 간사님하고 다시 논의해서, 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열지는 논의를 해야 되고 전체회의는 조만간 열 텐데 그것도 논의를 할 텐데 혹시 전체회의 전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할지는 논의를 해 보고요. 전진숙 위원님은 자기 법안 하지만 바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숙 위원님 오면 바로 통과시키고 오늘은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시지요. 만약에 전체회의 일정이 결정이 되면 전체회의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법안소위 간단히 하고……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지금 결국 법안 2개 통과시킨…… 아이돌봄 지원법하고 이 법안도 결국 아청법도 법안은 하나네요, 문구는 되게 많은데. 그렇지요?

○서법수 위원 차관님, 이제 1년 치 다 했지요?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년 치가 아니고 몇 년 치를 다 해 주신 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몇 년 동안 계류 중이어서……

○소위원장 김한규 차관님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본인이 통과시킨 걸로 영원히 기록에 남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9항, 12항, 13항, 14항, 1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논의하고 안건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데도 양 상임위를 오가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차관님 그리고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전진숙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 최성지